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김예지
이상휘 · 김용태 · 김태규
김승수 · 김정재 · 김성원
김위상 · 김상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가 반복·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.

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4제3항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4(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등의 설치·운영)	제7조의4(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등의 설치·운영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·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 터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 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.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 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 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</u>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